

업무 협력 약정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토지공사는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 양 기관간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약정은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토지공사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 및 범위)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토지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.

1. 해외 도시 및 지역개발, 유지관리 및 PM/CM 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2. 해외 각 국에 대한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의 전문가 파견사업, 개발 및 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3. 해외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시장개척 지원사업, 민관 합동 수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4.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지원
5. 해외 도시 및 지역개발 관련 세미나, 설명회 등의 공동 개최
6.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한 협력활동

제3조(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)

본 협정서에 규정한 협력내용 협의 및 세부 업무수행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업무협의 및 신의성실)

양 기관은 추가적인 합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만나 협의하며, 본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.

제5조(경비부담)

제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외에서 소요되는 직접 및 간접비용의 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제6조(효력, 개정 및 종료)

본 협정의 효력은 협정을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보완·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수정하고, 협정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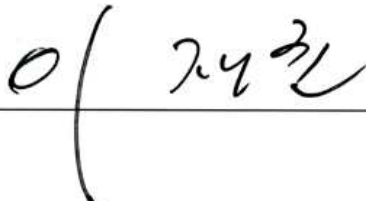
양 기관은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년 4월 29일



해외건설협회

회장 이재균





한국토지공사

사장 이종상